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제정)이유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의 개정을 추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개선 사업 이행 절차 구체화 (안 제6조, 제12조 개정)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제출 하도록 제출기한 규정

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의 정비 (안 제7조 개정)

기존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효율등급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방식의 성능개선을 위한 인정 기준 조정 및 녹색건축인증을 통한 인정 기준 신설

다.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구체화 (안 제8조 개정)

녹색건축물 전환의 원활한 확인을 위해 전환인정신청서 제출 기한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로 하고, 현장실사 수행

라. 녹색건축물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안 제9조 개정, 제12조제4항 신설)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등을 확인할 경우 대상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협조의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 취소

마. 서식 등 정비 (안 별지1~4, 별표1 개정, 별지5~6 신설)

착수계획서와 착수계획확인서 양식을 신설, 정부 로고 교체 및 고시개정 사항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령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를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이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등은”을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사용자 등이 6개월 이내에 [별지 5]의 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이하 “착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이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정하여 [별지 6]의 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이하 “착수계획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기존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을 2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20% 이상 개선하는 사업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

4.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성능을”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행 완료 후”를 “완료 후 1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건축물”을 “건축물”로, “이행결과”를 “결과”로, “확인하고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인정 신청서 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검토

및 녹색건축물 전환 검토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다음”을 “다음”으로, “구성”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을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평가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 착수계획서,”로, “계획서 및”을 “계획서,”로, “신청서의”를 “신청서, 녹색건축 전환 인정의 취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착수계획서 및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을 “착수계획서 및 사업”으로, “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을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업확인”을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계획서”를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사업계획서”를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이행되었고 에너지”를 “이행되었고”로, “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에너지 성능개선”을 “성능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가 인증결과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표 1]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 명판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 명판

1. 명판의 표시 및 규격



2. 비고
- 가. 크기: 가로 30cm × 세로 40cm × 두께 1.5cm 이내
 - 나. 재질: 스테인리스, 동판
 - 다.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별지1]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 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도로명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대상 건축물	건축물명						
	소유자				사용자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m ² m ²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m ² ·년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개월)				
	성능 개선 목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성능향상률(%)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	kWh/m ² ·년		kWh/m ² ·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kWh/m ² ·년		
		기타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000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 및 이행계획
	3. 예산 및 조달계획	4. 성능개선 목표 설정을 위한 증빙 서류
	5. 기존건축물 에너지 상태평가 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 성능개선 사업계획 확인서

성능개선 사업계획 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대상 건축 물	건축물명	대표자				
	소유자	사용자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m ² m ²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m ² ·년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개월)			
	성능 개선 목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성능향상률(%)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		kWh/m ² ·년		kWh/m ² ·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kWh/m ² ·년
		기타 사항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인정 [] 불인정 [] 보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000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계획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도로명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소유자	사용자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 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m ² m ²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사업계획 확인서 발급번호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m ² ·년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개월)		
	성능 개선 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성능향상률(%)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부하량	kWh/m ² ·년	kWh/m ² ·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kWh/m ² ·년	%
		기타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000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성능개선 사업내용 및 사업결과 요약서	
	2. 성능개선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에너지 성능개선 비용 계산서 - 건축물 평가용 데이터시트 - 현장 사진 및 설계도면 -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건축물 전개도	- 장비유량 계산서 - 조영밀도 계산서 - 기타 성적서 및 인증서 - 고지서 사본 등
	3. G-SEED GR 인증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4. 종합성능 개선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4]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인정번호		유효기간				
건축물 개요	기관명	대표자				
	건축물명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m ² m ²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 주소)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개월)			
	성능 개선 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성능향상률(%)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부하량	kWh/㎡·년	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kWh/㎡·년	%	
		기타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000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5]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 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도로명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대상 건축물	건축물명	성능개선 대상지정일		년 월 일	
	소유자	사용자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m ² m ²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년
주요 추진 계획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신청일		~ 20 년 월 일 까지		
	사업계획 주요내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 목표		% 절감	
		냉난방부하 절감 목표		% 절감	
		기존 건축물의 상태 평가		[] 포함	[] 불포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 포함	[] 불포함
		개선 후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 포함	[] 불포함
		개선 후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 계획*		[] 포함	[] 불포함
		(기타)			

(* 해당 항목이 사업계획 주요내용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또는 불포함에 √ 표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000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
| 첨부
서류 | 1. 사업 추진계획(일정계획 포함)
3. 기타 증빙 서류 | 2. 예산 및 조달계획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대상 건축물	기관명	대표자	
	건축물명	성능개선 대상지정일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m ² m ²	규모
	소재지 (도로명주소)	(지상) 층 (지하) 층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m ² ·년
주요 추진 계획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20 년 월 일 까지
	사업계획 주요내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 목표	
		냉난방부하 절감 목표	
		기존건축물의 상태 평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개선 후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개선 후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 계획	
(기타)		[] 포함 [] 불포함	
사업 착수계획서 검토결과		[] 인정 [] 불인정 [] 보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000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행	개정안
제5조(성능개선 사업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규모별로 구분하여 매분기마다 <u>녹색건축센터</u>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6조(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u><신설></u>	제5조(성능개선 사업의 대상) ① ----- ----- ----- ----- ----- ----- -----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u>녹색건축센터의 장</u> (이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사용자

제3장 <u>기존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u>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 축물전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생 략) 2. <u>다만 성능개선 이전에 이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인증 받았거나, 성능 개선 이 후에도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공 공건축물은 다음 각 목을 모 두 충족시켜야 한다.</u> 가. <u>에너지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 20% 이상 개선</u>	등이 6개월 이내에 [별지 5]의 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 수계획서(이하 "착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녹 색건축센터의 장이 이를 검토하 고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정하여 [별지 6]의 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 (이하 "착수계획확인서"라 한 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u>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u>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 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을 2 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 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20% 이상 개선하는 사업</u> <삭 제>		나. <u>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 지소요량 30% 이상 개선</u> <신 설> <신 설> ②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u>성능을</u> 만족시켜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평가는 ISO 1 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 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며, 세 부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기준」을 따른다. 제8조(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① 사용자 등은 사업 이행 완료 후 [별지 3]의 서식에 따른 녹색건 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 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u>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공공건 축물의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결</u>	<삭 제> 3. 「<u>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u>」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 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 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 4. <u>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 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u> ② -----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 ③ ----- 제1호----- ----- ----- ----- -----. 제8조(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① ----- <u>완료 후 1</u> <u>개월 이내에</u> ----- ----- ----- -----. ② ----- 건축 물----- 결
--	---	--	---	--

과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u>확인</u>하고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4]의 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명판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발급 받은 <u>공공건축물</u>의 사용자 등은 해당 건축물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등을 <u>확인</u>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u>녹색건축센터의 장</u>은 필요한 경우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검토 및 녹색건축물 전환 검	과----- ----- <u>확인</u>하기 위하여 전환인정 신청서 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제12조에 따른----- -----. 제9조(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u>건축물</u>----- -----. ③ ----- ----- <u>확인</u>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u>녹색건축센터의 장</u>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토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2조(적격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u>성능개선 사업 계획서</u> 및 <u>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u>의 적격성을 심의할 수 있다. ② <u>사업 계획서</u>의 적격 심의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u>사업 계획서</u>의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 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등은 <u>사업 계획서</u>를 재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u>사업확인</u> 신청서 및 제반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적격 심의) ① ----- --- <u>착수계획서</u>, <u>성능개선 사업 계획서</u>, ----- <u>신청서</u>, <u>녹색건축 전환 인정의 취소 등의</u> --. ② <u>착수계획서</u> 및 <u>사업</u> ----- -----. 1. <u>착수계획서</u> 및 <u>사업</u> ----- ----- ----- ----- -----. 2. ----- ----- --. ----- - <u>착수계획서</u> 또는 <u>사업</u> ----- -----. 가. (현행과 같음) 나. <u>착수계획서</u> 또는 <u>사업확인</u>
--	--	---	---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3. "보완"은 <u>계획서의 검토결과</u> 계획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u>사업계획서</u> 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 <u>착수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u> ----- -----.
③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에 대한 적격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 -----.
1.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의 검토결과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u>이행되었고 에너지</u>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	1. ----- ----- <u>이행되었고</u> ----- -----
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에너지 성능개선</u> 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u>성능개선</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가 인증결과와 상이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3772, 4753